「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13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19일 회부

○ 상정일자 : 제26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10월 1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위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폐지 및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로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반영 (안 제2조1항)

○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명칭변경 반영(안 제2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○ 본 조례안은 법률 폐지에 따라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

육성에 관한 법률」명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”을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탁) ① (생 략) 1. (생 략) 2.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.·4. (생 략) ② (생 략)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조(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3.·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----------.